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기술인증: 90일 (공고기간 제외) 기술검증: 120일 (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구분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기술명			
기술 보유자	법인명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기술 내용 (요약)			
신기술 범위			
검증 항목 (기술검증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술의 개발배경 · 연혁 ·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 ·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 · 평가횟수 · 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 · 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 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 · 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7.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8.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